

GEA KOREA

**(주) 기계 및 시설 판매에 관한
거래조건**

(국내거래)

용어정의

용어	의미
인수증서	공급대상이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일부가) 계약에 따른 인수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발행되는 인수증서.
인수시험	공급대상에 대한 계약규정에 따른 인수시험.
기준일	매도인의 청약일.
변경주문	매수인 및 매도인 각자의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한 것으로서 변경요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서면.
변경요청	매도인의 이행수단 또는 방법 등 공급대상에 관한 매도인의 변경요청.
법령변경	지침, 법령, 규정, 규제, 규약 또는 기준의 변경이나 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
계약	당사자들간 상품(및 관련 현장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으로서, (i)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합의, 또는 매도인의 청약서 및 이에 대한 매수인의 승낙서, 또는 매수인의 주문서 및 이에 대한 매도인의 승낙서, (ii) 본 거래조건, (iii) 서면 합의된 수정 및 추가사항 등 위 문서들에 대한 부록 일체로 구성된다.
매도인	GEA 계열회사 또는 GEA가 대한민국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설립한 회사로서 매수인에게 공급되는 공급대상에 관하여 매도인의 청약을 발행하거나 매수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도인의 청약	현장서비스(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 한함)를 포함한 공급대상에 대한 매도인의 견적 또는 제안.
계약금액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비용	간접비용, 보험비용, 금융비용 및 유사 요금과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 등 매도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 일체; 비용 산정 시 매도인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매도인의 정기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 요율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수행될 당시 통용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일(日)	역일(曆日).
하자	위험이전 당시 상품의 제작기술상 또는 물질상 하자나 누락 또는 서류미비 또는 현장서비스에 상업상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과 주의가 결여된 경우.
수출제한상황	수출관리규제로 인하여 수출허가가 요구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매도인의 이행이 지연, 금지되거나, 합리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
수출관리규제	관련 국내 및 국제법령, 규정, 명령, 수출금지조치, 상품의 교역을 금지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행정조치 또는 결의 일체.
수출허가	수출관리규제에 따라 매도인이 받아야 할 본 계약에 따른 상품 공급에 대한 감독당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공식 승인.
불가항력	전쟁 또는 테러 행위, 폭동, 소요, 금수 조치, 수출입 허가 지연 또는 거부, 전염병, 파업, 화재, 운송 또는 통관 지연, 지진, 홍수, 허리케인, 태풍, 폭풍,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틸리티 서비스의 중단, 고장 또는 감소, 기타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행위 또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모든 상황.
상품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이 인도할 시설, 장비, 부품 및 자재.
~을 포함한, ~등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인코텀스 (Incoterms)	기준일 당시 (과리) 국제상공회의소에 의한 인코텀®이라는 명칭으로 발행된 일련의 사전 정의된 현행 상업계약조건. 관련 인코텀 조항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용어나 표현은 본 약관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인코텀 조항과 본 거래조건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작업공정 보증	매도인이 상품의 작업공정, 성능 또는 기능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음을 계약서를 통해 보증한 사항. 단, 이러한 보증은 계약서에 “작업공정 보증” 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매수인	계약상 매도인의 고객.
매수인의 이행사항	본 거래조건 또는 매도인의 청약서에 매수인(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를 포함)의 책임으로 규정된 작업 등 매도인의 공급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공급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설비, 기록 및 서비스 등) 작업 일체.
공급일정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대상에 대한 공급계획. 본 거래조건 제6조 제6항에 따라 수정 가능.
공급대상	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사항으로 명시된 상품, 서류 및 (현장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서비스.
현장	공급대상이 제공되는 장소.
현장서비스	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사항으로 명시된 상품의 설치, 시운전 및 인수시험 또는 그 감독행위 등 매도인이 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험계획서	별지 A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거래조건	(경우에 따라) 별지 A를 포함하는 본 판매 및 현장서비스 거래조건.
보증조건	제8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보증기간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상품의 최초 가동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상품 인도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고정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총칙

본 거래조건은 매도인의 청약서 및 매도인이 작성한 상품 및 관련 현장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에 적용되며 그 일부를 구성한다.

매수인의 일반 구매조건에 포함되거나 매수인의 주문서, 청약서, 수락서 기타 문서 또는 계약에 편입된 매수인의 요구사항에 언급된 조건 등 본 거래조건 외의 어떠한 다른 조건들도 본 거래조건과 상충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매도인이 이에 명시적인 반대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거래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거래조건은 현재 매수인과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며, 본 거래조건과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매도인의 청약을 포함한) 기존 계약조항에 우선한다. 단, (i) 매도인이 청약서 또는 적법하게 서명한 문서로써 본 거래조건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수정하고 수정된 해당 조항을 언급한 경우, 또는 (ii) 본 거래조건이 매도인의 청약서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본 거래조건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본 거래조건은 상품 (및 관련 현장서비스)의 공급을 거래의 주목적으로 하는 매수인과 향후 체결하게 될 모든 계약에도 기본 합의양식으로서 적용된다.

1. 공급대상:

- 1.1 매도인이 수행할 작업은 공급대상에 한정된다. 매수인은 매수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1.2 공급대상을 공급하는데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다른 매도인들이 가진 장비와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연동 장비의 부피와 호환성 등 연동 작업에 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변경주문 / 계약이행 / 관련 서류:

- 2.1 매수인은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수락 여부와 수락할 경우 변경요청에 따른 이행방법과 (계약금액, 공급일정 등을 포함한) 계약수정사항을 통보한다. 매수인이 변경요청안대로 주문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들은 변경주문에 합의하게 된다. 양 당사자가 변경주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는 변경요청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단, 매수인이 (변경주문서 없이) 매도인에게 변경요청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매도인도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에 응할 경우, 매도인은 변경에 따른 비용을 배상 받고 지체로 인한 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요청을 이행할 것을 매수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한 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 2.2 인도 전 검수 및 시험은 계약서에 규정되며 규정된 사항에 한정된다.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인도 전 검수 및/또는 시험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의 변경주문절차가 적용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인도 전 검수 및 시험은 매도인의 표준검수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 2.3 매도인이 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교부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승인한 뒤 (부대의견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수인은 제출된 서류가 계약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2.4 매도인은 공급대상의 품목을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단, 교체대상은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품목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명시적인 계약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계획, 절차 및 작업방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 2.5 매도인이 어떠한 지연이나 중단, 장애나 방해도 없이 일정에 따라 (현장서비스를 포함한) 공급대상의 공급에 착수하고 이를 수행 및 완료할 수 있도록 매수인은 각각의 인도행위와 그 밖에 자신의 이행사항에 따른 활동에 적시에 착수하고 이를 빠짐없이 수행 및 완료하여야 한다.

3. 현장서비스:

- 3.1 현장서비스가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필요할 때마다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인수시험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A에 따른다.
- 3.2 매도인이 직접 또는 자신의 감독 하에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공급대상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 벽, 바닥 및 관련 관통부 등) 해당 구조물은 계약 및/또는 매도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상태로 요구기한까지 작업준비가 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작업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구조물을 서면으로 특정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현장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3.3 매수인은 현장서비스를 수행하는 매도인에게 아래 항목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구조물
 - (b) 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료 기타 원자재; 계약 및 매도인의 제반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소모품 및 각종 용품
 - (c) 통신회선
 - (d) 훈련, 검증된 노동인력, 기사 및 그 밖에 매도인이 요구하는 인원
 - (e) (매수인 측 인력이 작동, 유지할) 크레인 기타 인양 및 운반장비 등 현장에서 상품의 운반작업을 지원할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장비
 - (f) 작업공구 및 소형 기계부품을 보관할 건조실.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g) 경비
 - (h) 충분한 조명
 - (i) 적정 기상과 현장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내 건물 냉난방 기능
 - (j) 사무실 및 사무시설, 복지시설, 식당, 탈의실 및 세탁실
 - (k) 현장서비스 수행 목적으로 매도인이 요구하는 도면이나 정보
 - (l) 상품 시운전에 필요한 특수공구 및/또는
 - (m) 매도인의 요구사항에 따른 원료, 용품 및 제품에 관한 분석결과
- 3.4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간주나 기타 방식에 따른 매수인을 통한 다른 매도인이나 타인의 행위 및/또는 부작위 또는 그들이 수행한 작업이나 공급한 장비, 그들에 대한 보수지급, 복지, 안전장비 또는 작업 안전수단 제공, 그들의 작업 생산성이나 작업기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타인이나 다른 매도인들이 매도인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위에 언급된 타인이나 다른 매도인들의 행위나 부작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상 손실이나 손해 또는 인체 상해나 사망에 따른 일체의 청구와 책임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단, 매도인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손해는 예외로 한다.
- 3.5 매도인이 공급일정상 요구되는 기한 내에 현장서비스를 수행할 작업인력에게 필요한 비자나 취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본 거래조건 제6조 제6항이 적용된다.

4. 대금지급:

- 4.1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4.1.1 서명일 이후에 발행될 선급 청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4.1.2 별지 A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발송 준비완료 통지서와 함께 발행될 청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대금의 나머지 70%가 지급되어야 한다.
 - 4.1.3 별지 A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a) 매도인의 발송 준비완료 통지서와 함께 발행될 청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대금의 60%가 지급되어야 하며,

(b) 매수인의 인수증서 서명일 이후에(단, 늦어도 공급대상이 별지 A 제3항에 따른 인수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 발행될 청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대금의 나머지 10%가 지급되어야 한다

- 4.2 지급은 계약서에 다른 통화가 명시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할인없이 순현금으로 전자인체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 4.3 매도인이 지정은행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수령하여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4.4 매수인은 청구내역에 의의가 있는 경우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의의제기가 없는 경우 청구서는 유효하게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 4.5 매수인은 계약대금에 대하여 상계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공제나 유보도 할 수 없다.
- 4.6 매도인에게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대금의 1차 분납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공급대상의 공급에 착수할 의무가 없다.
- 4.7 지급기일까지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별도의 정식 청구를 하지 않고도 미지급된 부분에 비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미지급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미지급액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4.8 매수인의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귀책사유 및/또는 제4조 제7항이나 본 거래조건의 기타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중단으로 인하여 공급대상에 대한 공급착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제6조 제6항이 적용된다. 매도인이 지급기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에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공급대상 일부의 공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및/또는 이행을 중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4.9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 하에 있는 제3자가 매도인이 계약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데 필요한 특정 목표의 달성이나 활동 수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매도인의 대금 수령권 확보를 위하여 매도인은 그러한 지체가 없었다면 해당 목표를 달성했거나 활동을 수행했을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후에는 이를 달성 또는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매도인의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4.10 계약대금 외에도 계약상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본 거래조건 제4조의 위 규정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조세:

- 5.1 계약대금 및 그 밖에 매도인에게 지급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사용세, 영업세, 국내소비세 또는 원천세 등) 제반 세금, 각종 과세 또는 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도인의 이익에 대하여 과해지거나 공급대상의 인도에 관한 인코텀스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 기타 부과금은 예외로 한다.
- 5.2 현장서비스 및/또는 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공급대상이 설치될 국가의 관계당국이 매도인에게 세금, 과세 또는 과금을 부과한 경우, 매수인은 해당 부과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5.3 매수인이 위와 같은 세금, 과세 또는 과금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공제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지급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6. 인도/손실 위험/지연:

- 6.1 매도인은 공급일정에 특정된 날까지 관련 인코텀스 조항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관련 인코텀스 조항이 없는 경우, 매도인이 지정된 제조업체의 공장인도조건이 적용되며, 제조업체 공장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공장인도조건이 적용된다. 관련 인코텀스 조항이 매도인에게 인도지 국가로의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매도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수입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제6조 제6항에 따라 기한연장과 비용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6.2 공급대상의 손실 및 손상위험의 이전은 매도인의 청약일 당시 통용되는 인코텀스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매도인의 공급대상에 현장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실 및 손해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행사항 및/또는 현장에 대한 주의, 관리 및 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6.3 포장재, 치수 및 총 중량 표시는 추정치로서 매도인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 6.4 매도인은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된 여러 지역으로부터 공급대상을 인도할 수 있으며 운송방식도 서로 달리할 수 있다. 부분 인도나 환적도 가능하다.
- 6.5 공급대상이 인도 또는 제공된 즉시 매수인은 이를 검수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유형과 범위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추가검수 없이도 인지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 공급대상의 인도 후 또는 제공 후 즉시를 의미하며, 추가검수 후에야 인지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에는 인도 후 또는 제공 후 늦어도 7일 이내를 의미한다. 하자통보를 받은 매도인은 누락이나 하자를 교정한다. 매수인이 인도지점에서 제공된 공급대상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이를 보세창고에 인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험 및 보관비용 등의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인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인수시험이 규정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및/또는 위에서와 같이 매수인이 서면으로 하자를 통보한 경우, 그리고 검수 당시에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숨겨진 하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급대상에 포함된 상품 및 서류는 각각 인도 당시 완전히 인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현장서비스 역시 그 완료 당시 완전히 인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6.6 다음과 같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과 기간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i) 본 거래조건 제2조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ii) 이행중단, (iii) 이례적인 악천후, (iv)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인력 또는 상품의 예견불가능한 부족상황, (v) 매수인(매수인의 책임범위 내에 있는 제3자를 포함)이 또는 그에게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로 매도인의 이행에 지연이나 중단, 장애나 방해 또는 계약위반을 야기한 경우, (vi) 그 밖에 본 거래조건이나 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본 조항에 따른 권리가 부여되는 사건이나 상황. 매도인에게 본 조항에 따른 권리가 부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해당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7 매도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련 인코텀스 조항에 따른 상품인도를 2주가 넘게 지체한 경우, 매수인은 지체된 1주일당 계약대금 중 인도가 지체된 상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0.1%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에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에정액의 총 합계액은 계약대금의 2.5%로 제한된다. 그러나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은 상품의 비중이 미미하여 공급대상에 대한 이행 완료가 지연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정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공급대상의 공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청구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자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 외에는 중간 이행기일 또는 중간목표 기타 일정 미준수 등 이행지체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 6.8 불가항력에 의하여 각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지체, 중단, 방해 또는 차단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각자의 의무이행이 면책된다.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발생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지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해지일 당시까지 미지급된 대금 일체 및 다음 각 항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 중 해지일 당시 매도인에게 지급된 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i) 당시까지의 계약이행, (ii) 계약상의 무 중단행위, (iii) 계약상 의무이행방안 수립행위, (iv) 동원된 자원의 원상복귀 및 (v) 관련 하도급계약의 취소(적정액의 해약금 포함).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7. 소유권:

- 7.1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이 계약대금 전액을 확정적으로 수령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대금 전액지급 전까지 소유권이 유보되더라도 상품의 손실 또는 손해위험은 여전히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된다. 계약대금이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지급조건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상품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담보하거나, 임대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거나, 매도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용생산에 이용할 수 없다. 단, 매수인이 소유권 유보조건으로 인도된 상품을 자신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전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상품을 전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매수인은 본 거래조건으로써 소유권 유보조건으로 인도된 상품의 전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일체를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이러한 청구권 양도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유보와 마찬가지로 담보의 역할을 한다. 매도인은 본 거래조건으로써 그러한 청구권 양도를 수락한다.

8. 보증:

- 8.1 상품, 서류 및 현장서비스에 관한 보증:
- 8.1.1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을 전제로 매도인은 공급대상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보증한다. 보증은 계약보증기간 말일에 만료된다.
- 8.1.2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7일 이내 및 계약보증기간 내에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해당 하자를 서면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자처리책임을 부담한다.
- 8.1.3 매도인이 하자사실을 계약보증기간 후에 서면통보받은 경우, 매도인은 해당 하자가 잠복성 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계약보증기간 중 하자처리된 공급대상의 보증기간은 계약보증기간의 만료와 함께 만료된다.
- 8.1.4 매도인이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자처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하자의 성질과 교환부품 인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해당 하자를 조사 및 교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에 포함된 상품 관련 하자교정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하자상품의 관련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장서비스를 포함한) 공급대상 서비스 및 서류 관련 하자교정은 매수인이 하자 서비스나 서류의 관련 부분을 재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정에는 원격 액세스 솔루션(예: IoT 중단 장치 또는 IoT 게이트웨이)을 통해 구현된 수정이 포함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하자교정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현장에 접근하고 이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결함을 조사하고 수정하기 위해 공급대상 또는 현장에 설치된 장비와 관련하여 매도인에 의해 또는 매도인을 위해 설치된 모든 원격 액세스 기능을 사용할 권리를 매도인에게 부여한다. 매도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하자교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소 7일의 기간을 주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전 서면통지를 한 뒤 제3자로 하여금 해당 하자를 교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하자교정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때, 매도인이 통지받은 기간 내에 교정작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도 않았음을 전제로, 매도인이 자신이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였을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매도인은 제3자가 수행한 교정작업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교환부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조건(인도점)과 동일한 조건 하에 인도된다. 수리 또는 교환된 하자부품의 분해, 탈거,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사용된 인력 및 장비와 발생한 비용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위와 같이 하자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보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도인이 공급대상 또는 현장에 설치된 관련 장비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비활성화하거나 달리 제한, 방해 또는 방지하는 경우 매도인의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손상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매도인의 결함 조사 또는 해결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매도인은 조사 또는 결함 수정(출장비 발생 포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의 보증의무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매도인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손상되는 한 무효가 된다.
- 8.1.5 매도인은 하자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자처리책임을 부담한다: (a) 일상적인 마모, (b) 정품이 아닌 수리부품 사용, (c) 계약서나 매도인이 작성한 설명서에 기재된 사양을 엄수하지 않은 원료나 소비재, 용품 사용, (d) 상위장비 및/또는 하위장비의 하자, (e) 매도인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없이 이루어진 개조, (f) 부식성 또는 마모성 물질 사용, (g) 매도인의 사용설명서 및 지침서, 매수인의 자체 품질보증조건 등 적절한 기술적 관행이나 계약서 또는 매도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을 엄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을 보관하거나 처리, 사용, 작동 또는 유지, (h)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충당한 정보, 서비스, 인력, 장비 기타사항, (i) 매도인의 인수시험, 설치감독 및/또는 설치작업을 불허, (j) 매도인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기타 상태나 상황 (이상을 통틀어 “보증조건”이라 함).
- 8.1.6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인수시험이 본 거래조건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그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통해 제8조 제1항 제1호의 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인수시험에 대하여는 별지 A 제1, 2, 3 및 4항이 적용된다.
- 8.2 작업공정 보증:
- 8.2.1 매도인은 제8조 제2항, 제3항과 별지 A에 따라 상품이 작업공정 보증요건에 충족됨을 보증한다. 작업공정 보증은 별지 A 제3항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 때에 만료된다.
- 8.2.2 개별부품을 포함한 공급대상의 공정이나 성능 또는 기능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적 수치, 데이터 기타 자료들은 “작업공정 보증” 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단지 예시에 불과할 뿐 작업공정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8.2.3 작업공정 보증은 다음 사항들을 전제로 한다: i) 계약서에 기재된 사양을 엄수하는 원료, 자재 및 용품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공급, ii) 인수시험 시 매도인이 요구하는 훈련, 검증된 인력을 매수인이 충분히 공급할 것, iii) 매도인에게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서면요구대로 제품, 용품 및 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 iv) 매도인이 인수시험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시할 것, v) 위에 언급되지 않은 그 밖의 보증조건, vi) 별지 A에 명시된 조건 및 기타 조항.
- 8.3 면책 및 책임한도:
-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i) 매도인은 용도적합성이나 상품성에 관한 보증 등 위의 제8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아래의 제9조 6항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묵시적인 또는 법령 및 관습에 따른, 또는 그 밖에 매수인에게 유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일체의 조건, 보증, 보장, 진술에 대한 책임을 본 조항으로써 배제하고 부인한다. (ii) 제8조 제1항의 범위 내에 있는 하자나 제8조 제2항의 범위 내에 있는 작업공정 보증 위반사항 등 공급대상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제8조 제1항 제4항과 별지 A 제5항에 제시된 것으로 한정된다. (iii) 매도인은 제10조 제5항에 기술된 손실이나 손해는 물론 제8조 제1항의 범위 내에 있는 하자나 제8조 제2항의 범위 내에 있는 작업공정 보증 위반사항 등 보증위반 또는 하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 기밀과 IP,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와 스마트 장비:
- 9.1 매수인은 구두, 전자방식, 서면, (현장 방문·시험·감사 등을 통한) 시각적 방식 등 그 전달수단과 “비밀” (“비밀정보”)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공한 일체의 정보, 도면 및 데이터를 개인 및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대한 상품 판매(서면으로 별도로 합의된 경우 제외)와 매도인의 모든 청약(다만 가격과 기타 상업적 조항 제외), 매도인이 제공한 상품 또는 작업공정, 운영 매뉴얼, 교육 문서, 제품 브로셔, 인도 또는 인수증서 등의 정보는 제외되며,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기존 저작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매수인은 (자신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및/또는 증권거래규정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 계약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비밀정보나 그 세부사항을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단, 비밀정보가 본 규정의 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매수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를 공개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본 규정이 해당 비밀정보의 발표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의 어떠한 내용도 매수인이 상품 관련 서류(비밀정보 제외)와 함께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9.2 비밀정보의 공개가 계약상 필요한 경우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본 규정 이상으로 엄격한 비밀정보 사용금지 및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야 한다. 증권거래규정이나 관련법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매수인은 비밀정보 중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비밀정보가 비밀로 취급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9.3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되거나 이용이 허락된, 또는 공급대상 및 현장서비스에 활용되거나 구현된 상품, 서류, 비밀정보 또는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매도인(또는 그 하도급자)의 전유재산에 해당한다.

- 9.4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계약대금 전액 지급과 제3자의 권리 인정 및 비밀유지의무의 준수를 전제로, 계약에 따라 공급된 상품의 운용 및 유지와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제공한 공급대상 및 비밀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비독점적, 비양도성 권리를 취득한다. 매수인은 기존 공급대상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려면 공급대상에 대한 소유권도 반드시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 9.5 매도인의 상품설계가 제3자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제3자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자의 청구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한 것이거나 관련된 것인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i) 매도인이 공급하지 않은 장비, 서비스,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와 상품의 상호연결, 결합 또는 병용, (ii)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작성한 설계, 지시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 (iii) 매도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이루어진 공급대상의 개조, (iv) 공정, 방법,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공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v) 매수인이 작업공정의 일부로써 공급대상을 사용(그 결과 생산되거나 가공된 제품 포함), (vi) 매도인의 사업자등록국 외에서 부여되어 해당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특허, (vii) 매수인 또는 그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보유하거나 취득한 특허, (viii) 제6조 제2항에 따른 위험이전 이후에 발효되는 특허. 위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은 제3자의 침해청구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본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제3자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매수인은 상품에 대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을 정식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행위를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매수인을 위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다.
 - (b)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체상품을 제공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상품을 개조한다. 단, 대체상품이나 개조된 상품은 기존상품과 실질적으로 기능적 사양이 일치하여야 한다.
 - (c) 제품을 반환받는데로 매수인에게 구매대금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자신에게 지체없이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판결이나 결정에 승복하거나 제3자의 청구에 타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통지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면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매수인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게 상품 위험이전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때까지 자신이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또는 인지하였어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제8조 제3항이 적용된다.
- 9.6 이 조항은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제어 시스템 또는 자동화(총칭하여 '소프트웨어')가 매도인의 공급대상에 포함되는 한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에는 매도인이 단독 제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개선 사항, 업그레이드, 관련 문서도 포함된다. 전체 계약금액을 수령하고 매수인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의 청약에 명시된 요건 내에서 매수인에게 비독점적이고(아래에 명시된 경우 제외) 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소프트웨어가 배송된 날 또는 매수인이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소프트웨어 보증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고 사용될 경우 매도인의 청약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사양(있는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작동함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소프트웨어가 매수인 또는 제3자의 데이터 보호 또는 IT 보안 요건을 준수함을 보증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보증의 미준수를 발견하고 소프트웨어 보증 기간 내에 이러한 미준수에 대한 상세한 서면 통지(미준수에 대한 설명과 발견에 대한 완전한 정보 포함)를 매도인에게 즉시 제공하거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제량으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한다. (i) 소프트웨어의 향후 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정, 패치 또는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ii) 소프트웨어 수정에 대한 지침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거나 미준수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는 (iii) 매도인의 시설에서 수정되거나 교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은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설치 또는 매도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수정 또는 구성의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보증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제공한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페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미준수에 대해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매수인은 결과적인 손실, 부상 또는 손상으로부터 매도인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의무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미준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획득한 모든 보증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에는 있는 그대로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매도인에게는 유지 보수,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도인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저작권, 상표, 특허, 기타 지적 재산권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되거나 전송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매수인 생성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보유한다. 소프트웨어는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와, 매도인과 제3자 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단, 매도인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부여된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다. 매수인은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수정 또는 디컴파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스 코드를 찾거나 식별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한, 이 조항에 반대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적용된다. 매도인은 해당 OS-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에 근거하여 OS-소프트웨어를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건은 매수인이 OS-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한다(보증과 책임과 관련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포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와 구체책은 위에 독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9.7 매도인은 기업 가치 사슬(범위 3) 회계 및 보고 기준('GHG 프로토콜')에 따라 감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개적으로 공개한다. 판매된 제품의 사용 단계(범위 3.11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도인은 고객의 특정 에너지 그리드 믹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특정 에너지 그리드 믹스 즉, 해당 정보가 수집되고 추적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판매 제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매수인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매도인이 연간 지속 가능성 보고와 감사를 위해 이 정보를 집계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 9.8 매도인의 공급 범위에 연결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거나 매도인이 공급 범위와 관련하여 나중에 연결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매수인과 합의)하는 경우 GEA 그룹사는 각각 공급대상에 제공,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보증과 기타 의무 이행, 공급대상/현장의 설치된 관련 장비/연결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의 문제 해결/모니터링/기능 개선/추가적인 개발, 매수인에게 공급대상과 현장의 설치된 관련 장비에 관한 정보와 제품 지원 제공, 공급대상과 현장의 설치된 관련 장비에 대한 벤치마크와 최적화 잠재력 수립 그리고 공급대상과 설치된 관련 장비 최적화, 장비/소프트웨어/클라우드 기반 솔루션/프로세스/서비스의 개발/설계/엔지니어링/제조/공급/자동화/개선/업데이트/모니터링 또는 서비스 작업, 알고리즘/통계 분석/인공지능 솔루션 생성과 수정, 프로젝트 수행과 유사 기능 최적화, 마케팅과 영업 활동 지원, 파생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포함한 해당 파생 데이터를 상업용으로 생성과 사용 중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연결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서 GEA Cloud에 전송되는 기술 데이터를 생성, 수집, 처리, 분석, 저장, 집계, 사용하는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취소할 수 없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가능하고 재라이센스가 가능하며 로열티가 없는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급대상과 현장의 보조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연결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파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모든 파생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 9.9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른 보증과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해당 기술 데이터를 GEA Cloud에 전송한다. 또한 GEA 그룹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해당 회사가 공급 범위와 기술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량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설치 중에 공급대상(또는 그 일부)을 또는 나중에 (GEA 그룹사가 요청한 경우) 매도인의 클라우드 또는 IT 환경 또는 기타 유사 솔루션에 연결하도록 하거나 (동일한 경우) 매수인이 연결한다. 매수인은 IoT 중단 장치 또는 IoT 게이트웨이에 대한 인터넷 또는 기타 연결에 매도인이 원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완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고, 연결이 때때로 매도인이 발표하거나 해당 규정이나 표준에서 권장하거나 요구하는 해당 요건(예: 구성, 보안 등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이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매도인에게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증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에 따라 공급 범위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항은 기술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보증 또는 기타 유사 의무로 이어지지 않는다. 매도인은 제량에 따라 언제든지 저장된 기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삭제는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매도인이 기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i) 매도인의 영업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 ii) 공급대상의 보안이나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 또는 iii)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 물질 또는 프로세스의 테스트와 관련된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다.

- 9.10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GEA 그룹사'는 매도인과 그 계열사를 의미하며, '연결 제품'은 구성 요소(예: IoT Edge Device 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 체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기술 데이터를 획득, 생성 그리고/또는 수집하거나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러한 데이터를 매도인의 클라우드나 IT 환경 또는 기타 유사한 솔루션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의 물리적 제품을 의미한다. '관련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포함하는 디지털 서비스로서, GEA 그룹사 또는 이를 대신하는 제3자가 해당 서비스가 현장에 설치된 공급 범위 또는 장비에 연결된 경우 서비스가 없다면 연결 제품이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 데이터를 획득, 생성 또는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급 범위 또는 설치된 관련 장비의 기능을 추가, 모니터링, 업데이트, 최적화, 수정 또는 조정하는 서비스이다. '기술 데이터'란 연결된 제품의 조건, 작동, 효율, 생산성, 가용성, 유지보수, 상태, 오작동 또는 최적화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원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메타데이터는 물론, 연결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원시 제품 데이터를 의미한다. '파생 데이터'란 i) 알고리즘 또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통해 파생되는 통계적 또는 기타 분석과 데이터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GEA 그룹사(또는 이를 대신하는 제3자)가 기술 데이터로부터 파생시키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 ii) 센서 융합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 또는 방법을 통해 파생되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 iii) 기술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함께 통합되는 모든 데이터(단, 이러한 통합 데이터는 이 접촉에 따라 수집된 기술 데이터를 식별하거나 제3자가 통합 데이터 세트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파생시킬 수 없음)를 의미한다. 기술 데이터에는 파생 데이터는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10. 구제수단 및 책임제한:

10.1 계약해지 사유:

- 10.1.1 (i) 본 거래조건규정이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 경우, (ii) 상대방이 자신의 계약상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해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iii) 상대방이 청산, 파산 기타 지급불능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서 그 자산이나 사업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들과 협의나 조정에서 나서거나(지급능력이 있는 회사로서 합병이나 재정비를 목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경우는 제외) 이와 유사한 협의, 사건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2 매수인에 의한 계약해지:

- 10.2.1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게 된 매수인이 적시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은 i) 계약대금을 초과하여 공급대상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액의 추가비용과 ii) 인도된 공급대상의 시가와 계약대금의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은 권리 외에 계약해지 또는 취소/철회 시 매수인에게 허용될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은 일체 배제된다.
- 10.2.2 매도인은 제9조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발생한 그 밖의 비용, 경비, 손실이나 손해 일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10.2.3 매도인의 청약서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매수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수인의 임의 해지권이 인정되고 실제로 매수인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매도인은 제6조 제8항에 따라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와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에 더하여 계약상 자신의 기대이익 전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

10.3 매도인에 의한 계약해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게 된 매도인이 적시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은 제6조 제8항에 따라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와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에 더하여 계약상 자신의 기대이익 전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

10.4 배타적 구제수단: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해지,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위반, 과실 또는 기타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배상보장, 취소/철회 등)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건, 상황이나 이론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비용지급 또는 비용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금감액, 보상 또는 시정조치, 해지 등 그 방식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정된다.

10.5 특정 손해배상의 배제:

본 조항에 반하는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을 제외하면 본 규정은 유효하다:

(a) 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

(b)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는 매도인의 책임 배제(이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함)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수익이나 이익의 손실, 기회, 생산 또는 계약의 상실, 사용기능의 상실, 고장비, 원료, 원자재, 용품 또는 제품의 손실 또는 손상, 공장의 유희 또는 가동 지연상태, 영업권의 상실, 고객이나 제3자가 매수인에게 부과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또는 위약금, 제3자에 대한 매수인의 계약상 책임, 리콜 비용, 매수인이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금, 과태료 또는 벌금, 기타 재정적 또는 경제적 손실이나 손해 등; 이 때 각각의 손실이나 손해가 직접적, 결과적 또는 간접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결과적, 간접적, 특별, 부수적, 징벌적 또는 전형적인지 여부 등 그 발생원인을 불문한다.

10.6 총 책임한도:

- 10.7 본 조항에 반하는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는 매도인의 책임 배제(이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함)를 제외하면, 계약상 또는 계약과 관련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총 책임한도는, (해지규정 등)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의무위반, 과실 또는 기타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계약대금감액 또는 상환, 해지, 취소/철회, 보상 또는 시정조치 등 책임의 발생경위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대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10.8 본 조항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단서를 제외하고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절차에 있어 사실상 매도인이 자신의 계약상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완료하였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공급대상을 공급하였으며, 공급대상에 대한 하자 일체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계약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 및 공급대상의 사용에 따른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일체의 공개적, 비공개적 청구와 권리, 청구원인 및/또는 구제수단은 차단되고 소멸한다. 단, 본 조항은 사기 사건 또는 보증기간 내에 법적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이에 대한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지침 / 법령변경 / 인·허가 / 안전:

- 11.1 상품은 매도인의 청약서에 명시된 기준일 당시의 정부 지침, 법령, 규정, 규제, 규약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법령변경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그 준수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급대상 및/또는 매도인의 작업이행 수단이나 방식이 영향을 받는 경우, 매도인은 제6조 제6항에 명시된 구제수단 등 계약조건을 공정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작업공정 보증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배기, 배출 등 환경규제기준 준수와 그 밖의 법령변경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11.2 매수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i) 현장, 상품 및 관련 장비, 공장, 시설 또는 설비의 소유, 설치, 시험, 시운전, 가동 및 유지와 현장서비스 이행 등 관련사항에 대한 일체의 승인 및 인·허가, (ii) 제반 현장인력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상시 안전 작업환경 유지, 공급대상에 대한 안전한 상시 접근수단 제공, 관련 지침, 법령, 규정, 규제, 규약 및 기준과 매도인이 제공한 운용·유지 편람 및 지침서에 따른 안전한 현장활동 수행, (iii) 공급대상의 일부로 제공된 안전장치, 보호대 또는 경고문의 제거 또는 변경 금지. 매수인은 본 조항에 열거된 의무를 엄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해, 인적 부상이나 사망 사고 또는 금전적 손해나 기타 불이익에 따라 발생한 모든 클레임과 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매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계약의 수정:

- 12.1 계약조항의 변경, 추가 또는 적용면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확인, 증명된 서면 계약수정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구속력이 인정된다.

13. 수출관리:

- 13.1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할 상품이 수출관리대상이거나 수출관리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수출제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출제한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수출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 및 경비 등 계약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추가비용 및 경비 일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인은 최종소비자 인증 등 수출허가 취득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수출허가 취득이 크게 지체되거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행이 금지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3.2 수출허가가 거부 또는 취소되거나, 수출금지령에 따라 계약이행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수출제한상황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즉시 면제받는다. 수출제한상황이 발생하여 매도인의 공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들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도인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도 위와 같다. 매도인은 수출제한상황과 관련된 지체나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한 청구에 있어 매수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13.3 제13조 제2항의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수출관리규제 및/또는 수출허가 취득 실패 또는 수출금지령에 의하여 청약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통지한 매도인은 청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주일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상 진행중인 일체의 작업에 대한 제반 비용 및 경비 또는 자신이 공급업자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및 경비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체의 손실 및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13.4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할 상품과 관련된 수출관리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적정 인가없이 상품을 판매, 임대, 양도 또는 재설치하는 행위 등 자신 또는 매도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조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자신이 위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 위반과 관련된 청구, 진행중인 소송, 벌금, 비용, 손실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정보처리:

- 14.1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거래관계상 자신이 공개한 개인정보 및 기타 정보를 매도인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1) (청구서 작성 및 처리를 포함한) 매수인과의 계약의 관리 및 이행, (2) 매수인에 대한 추가 상품 및 서비스 광고 및/또는 제공, (3) 고객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매수인과의 거래관계 관리. 이러한 정보에는 매수인의 고용인들이나 수임인들에 관한 정보, 특히 그들의 성명, 직위, 회사, 회사 내 직무,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주소 등) 업무상 연락처, 발주이력, 분쟁이력(예: 하자처리 요구 또는 분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매도인은 위와 같은 목적범위 내에서 (i) 매도인 자신이 직접 및/또는 계열사나 기타 외주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ii)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외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서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15. 기타:

- 15.1 계약조항들 중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그와 관계없이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다. 당사자들은 무효가 되거나 강제력을 상실한 규정을 이에 최대한 근접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한다.
- 15.2 본 거래조건에 나타난 조항 제목이나 그 밖의 표제는 참고용일 뿐, 해당 조항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수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복수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
- 15.3 제11조는 별론으로 하고, 본 거래조건에 언급된 법령이나 규정은 (그 명칭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시 시행 중인 그 개정 법령/규정 또는 제개정 법령/규정은 물론 당시 작성, 발령되거나 그에 따라 또는 그로부터 효력이 부여된 관련문서, 명령, 안(案), 규칙, 조례, 인·허가 및 지침 일체를 포함한다.
- 15.4 당사자들 간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연락, 통지, 문서 및 도면의 교환이나 사용허가는(경우에 따라서는 현장활동 수행 중에도) 유창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 15.5 계약서가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일방 당사자의 표준 또는 통상 거래조건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및/또는 그 특정 해설부분이나 조항, 별첨, 별지 등이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계약서를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일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6 계약서는 관련사항에 관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들이 이에 앞서 합의하거나 합의한 일체의 사항을 대체한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구두진술, 보증, 약속 기타 진술사항과 계약일 이전에 전달 또는 교환된 (매도인의 브로셔나 판촉자료 등) 일체의 문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이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본 조항으로써 명확히 한다. 매수인은 계약체결 당시 위와 같은 진술, 보증, 약속이나 문서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 15.7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매도인은 매수인의 동의없이도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계약상 의무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15.8 매수인은 현장서비스를 수행하는 매도인과 그 하도급업자들에 대하여 공급대상 및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전(全)위험담보 보험이 적용되도록 한다. 해당 보험은 제1차 보험으로서 매도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해당 보험증서의 사본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16. 분쟁/준거법:

- 16.1 계약의 존부와 그 효력 또는 해지에 관한 문제 등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단, 매도인은 관할이 인정되는 다른 법원에도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실체법으로 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적용되지 않는다.

별지A

인수시험 및 작업공정 보증

1. 인수시험 / 조건: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상품의 시운전(매도인이 인수시험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항은 제외) 결과 매도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해당 상품이 안정적으로 작동된다고 여겨지면, 그 후 지체없이 인수시험이 수행된다. 인수시험은 매도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되고 검증된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상 자신의 의무 외에도, 인수시험 시 (i) 원료 및 용품 일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을 준수하고 있고(명시된 사양이 없다면 아래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한 시험계획서에 따른다), (ii) 매도인의 요구대로 원료, 용품 및 제품에 관한 일체의 분석결과가 적시에 제공되며, (iii) 상품의 상·하위장비 일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나 시험계획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인수시험의 수행책임은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늦어도 인수시험 개시 14일 전에 인수시험 개시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매도인이 인수시험을 감독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수시험을 참관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관련 검사보고 및 기록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험계획서:

계약서에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수시험의 절차 및 요건은 매도인의 표준 시험절차 및 요건에 따른다. 해당 절차 및 요건은 공급대상과 계약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서, 매도인은 늦어도 인수시험 시작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시험계획서”의 형식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계획서에는 특히 전제조건, 미이행 작업공정 보증, 인수시험 항목, 해당 인수시험의 소요시간, 허용 측정오차와 인수시험 수행 절차 및 방법이 명시된다.

3. 공장인수:

매도인은 인수시험에 관한 작업공정 보증사항 및 자신의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다음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시점에 사실상 공급대상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상품이 평균적으로 작업공정 보증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인 경우
 - 작업공정 보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수시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교정한 경우
 - 인수시험 완료 전에 매수인이 상품을 그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단, 매수인이 시험계획에 따라 매도인의 감독 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러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수인이 위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개월 후, 설치일로부터 3개월 후 또는 인도준비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인수시험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상품이 인수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매수인이 인수시험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아래 제5항에 따라 작업공정 보증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지급하였거나 대금을 감액한 경우.

4. 인수증서:

위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이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일부가) 인수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급대상에 대한 인수증서(이하 “인수증서”)를 제시하고 매수인은 해당 인수증서에 즉시 서명하여야 한다. 인수증서에는 공급대상이 인수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매수인은 상품의 작동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하자나 누락이 아닌 이상 그러한 하자나 누락의 존재를 이유로 인수증서의 발급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그러한 하자나 누락은 매수인에 의해 인수증서에 기재되며, 실현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이에 대한 교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해당 하자나 누락이 인수증서의 유효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매수인이 본 제4항에 따른 인수증서 서명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수증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공급대상이 위 제3항에 따라 확정적으로 완전히 인수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에 해당 인수증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매수인은 인수증서가 발행된 후에야 공급대상을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수증서가 발급되거나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즉시 매수인은 이행기가 도래한 자신의 의무 일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수시험 탈락:

인수시험에서 상품이 작업공정 보증요건에 미달할 경우, 매도인은 최대한 신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도인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실패원인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접근권한, 자원, 정보 및 서류 일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이) 매도인에게 실패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매도인은 지체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실패원인을 교정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소한 차이로 통과기준에 미달된 것이 아닌 한 관련부분에 대한 인수시험이 재수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관련부분에 대한 인수시험에서 재차 탈락하는 경우, 매도인은 최소 3회에 걸친 교정시도와 매수인과의 협의 후부터는 추가 교정조치를 수행할지, 아니면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공정 보증 관련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지급할지 여부(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대금을 감액하기로 한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대금감액은 상품의 공정판대가와 인도, 설치 및 시운전된 상태 그대로의 상품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루어져야 한다. 상품이 작업공정 보증요건 기타 인수시험 통과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지급 또는 경우에 따라 합의에 의한 대금감액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총 지급액 또는 대금감액 액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대금(또는 공급대상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인수시험 탈락의 원인이 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의 일부)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이 14일이 넘게 인수시험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상품이 인수시험에 탈락한 경우, 인수시험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인수지체:

매도인의 귀책사유없이 인수시험이 지체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부분별 시험:

계약서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매도인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 대한 시험은 부분별로 수행된다. 이 경우 본 별지 A의 규정은 부분별로 적용된다.

부록 B

특별 수출 통제 규정

독일 뒤셀도르프에 등록된 GEA Group AG("GEA")에 속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법인 또는 영구 시설("계약자")이 제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받는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소프트웨어 포함)의 수령인("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수출 통제 요건입니다(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의 최종 모회사인 GEA는 독일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GEA의 모든 그룹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유럽 연합에서 제정된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사회 규정(EU) 제 833/2014호 12g조를 포함하여 독일에서 시행 중인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공급/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상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일에서 시행 중인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다음 조항을 수락하며 다른 곳에서 합의된 모든 상충되는 조항을 대체하고 이를 대체합니다:

1. 구매자가 계약자로부터 위에 명시된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이사회 규정(EU) 833/2014호 부속서 XI, XX, XXXV 또는 XL 또는 기타 부속서에 나열된 상품 또는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러한 상품을 러시아 연방에 판매하거나 러시아 연방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자가 이사회 규정(EU) No 765/2006의 부속서 XVI, XVII, XVIII 또는 XXX 또는 위에 지정된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부속서에 나열된 상품 또는 기술을 계약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상품을 벨로루시로 또는 벨로루시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 수출 또는 재수출;
2. 구매자는 가능한 리셀러를 포함하여 상업적 사슬의 하위에 있는 제3자에 의해 제1항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구매자는 리셀러를 포함하여 상업적 체인에서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제3자가 제1항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4. 항목 1, 2 또는 3의 위반은 계약의 필수 요소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계약자는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는 제1항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제3자의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매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 준수에 관한 정보를 단순 정보 요청 후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수출 통제 이벤트에 해당합니다.